정 관

제 1 장 총칙

- 제1조 (상호) 당 회사는 에스에이엠 주식회사라 하며, 영문으로는 SAM Co.,Ltd. 라 표기한다.
- 제2조 (목적)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.
 - 1. 일반서비스업
 - 1. 연구용역업
 - 1.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 - 1. 데이터베이스업
 - 1. 정보처리 및 시스템 컴퓨터운영 관련업
 - 1.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업
 - 1. 전산감리 및 관련 자문업
 - 1.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업
 - 1. 건설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
 - 1.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 및 서비스업
 - 1. 교통관련 기술개발 및 서비스업
 - 1. ITS 관련업
 - 1. 드론촬영 및 영상 기술서비스업
 - 1. 수치지도 및 고정밀지도 제작업
 - 1. 측량 및 공간정보처리업
 - 1. 항공사진 촬영 도화 및 영상처리업
 - 1. 지하시설물 측량업
 - 1. 정보통신공사업
 - 1.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
 - 1. 공간임대업
 - 1. 제조업
 - 1.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
 - 1.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- 제3조 (본점과 지점) 당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.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.
- 제4조 (공고방법) 당 회사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국제신문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식(株式)과 주권(株券)

제5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)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00 주로서 기명식 보통주식로 한다.

- 제6조 (1주의 금액)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100원으로 한다.
- 제7조 (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) 당 회사는 설립시에 8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.
- 제8조 (주권의 종류) 당 회사의 주식은 전부 기명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, 10주권 , 100주권의 3종류로 한다.
- 제9조 (주권불소지) 당 회사는 주권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 (주금납입의 지체) 회사설립시의 주식인수인이 주금납입을 지체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(遲滯株金) 1,000원에 대하여 1원의 비율로서 과태금 (過怠金)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 제11조 (주식의 명의개서) ①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2조 (질권의 등록 및 신탁 재산의 표시)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 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주권을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.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.
- 제13조 (주권의 재발행) ① 주식의 분할·병합, 주권의 오손 등의 사유로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 소정의 청 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확정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4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당 회사에서는 매년 1월 1일 부터 정기 주 주총회의 종결일자까지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.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 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하거나 또는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.
- 제15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의 신고) 주주, 등록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성명, 주소 및 인감을 당 회 사에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 3 장 주주총회(株主總會)

- 제16조 (소집) 당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 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.
- 제17조 (의장)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.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주 주총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.
- 제18조 (결의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 로,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.
- 제19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총회의 의사록)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 ② 총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임원과 이사회

- 제20조 (이사와 감사의 수) ①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,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.
- 제21조 (이사의 선임) ①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.
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22조 (감사의 선임) 당 회사의 감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.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제23조 (이사 및 감사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. 다만,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.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.
- 제24조 (대표이사) ① 당회사는 대표이사 1인을 두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를 보좌할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 - ② 필요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.
 - ③ 대표이사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 - 단. 제20조에 의하여 당 회사의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

제24조 대표이사를 선임 할 수 있다.

- 제25조 (업무진행) ① 대표이사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회사의 업무를 분담 집행한다.
 - ②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 시에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6조 (임원의 보선)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. 다만, 법정 수를 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. 보선 및 증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이사나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.
- 제27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당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 감사는 주주총 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제28조 (보수와 퇴직금)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5 장 계산(計算)

- 제29조 (영업연도)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- 제30조 (재무제표,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) ① 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 개최 6주간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 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) 대차대조표
 - 2) 손익계산서
 - 3)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
 - ② 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,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31조 (이익금의 처분) 매기 총 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 - 1) 이익준비금(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액의 10분의 1이상)
 - 2) 별도적립금 약간
 - 3) 주주배당금 약간
 - 4) 임원상여금 약간

제31조 5) 후기 이월금 약간

- 제32조 (이익배당)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 질권자에게 지급된다.
- 제33조 (최초의 영업연도) 당 회사의 최초 영업연도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- 제34조 (준용규정 및 내부규정) ①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결의 및 상사에 관한 법규, 기타 법령에 의한다.
 -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.
- 제35조 (발기인의 성명과 주소) 당 회사의 설립 발기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한다.
- 제36조 (시행일자) 이 정관은 2020 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발기인 : 배상훈 (640827-1093512)

(주소)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45 씨동 3502호(용호동, 더블유)

발기인: 양정환 (980411-1902716)

(주소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9 에스동 1604호(우동)

발기인: 양수현 (940415-2901829)

(주소)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39 벨리오 508호(마곡동)

발기인 : 배경령 (010213-4076123)

(주소)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45 씨동 3502호(용호동, 더블유)

발기인: 배경은 (980115-2076012)

(주소)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45 씨동 3502호(용호동, 더블유)

발기인 : 정희선 (690926-2812328)

(주소)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45 씨동 3502호(용호동, 더블유)